

다중이용업소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Multiple Available Premises

송윤석[†] · 현성호 · 윤명오*

Yun-Suk Song[†] · Seong-Ho Hyun · Myong-O Yoon*

경민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5. 10. 25. 접수/2005. 12. 12. 채택)

요약

본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이후 시행된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고, 다중이용업소의 공간 및 영업형태적 특성에 따른 방화관리측면에서 문제점 및 취약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방화관리체계의 명확화, 업주 또는 직원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방안 등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다중이용업소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has investigated problem that fire damage and a loss of lives increased continuously in spite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enforced since fire accident of multiplex available premises, and has analyzed problem and weakness factor through question investigation in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by space of multiplex available premises and special quality business form. We have propose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efficient multiplex available premises studying fire fighting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way about employer or employee with specification of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system, on the basis of such analysis.

Keywords : Multiplex available premises,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Fire fighting safety education

1. 서 론

현대사회의 발전은 사회구조의 복잡 다양화와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흥주점, 클럽, 고시원, 수면방 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 다중이용업이 등장하고, 또한 복잡한 공간형상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경향의 사회문제로서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 인명안전대책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이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 중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 이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해 대상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보다 더욱 강화시킨 소방, 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방화관리주체가 불명확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등 방화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가장 취약한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체계를 강화하거나 제고하는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공적인 행정력만으로 화재 등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건축물이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 어느 쪽도 방화안전에 관한 법적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유사시에는 어떠한 대상보다도 더욱 더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잦은 인테리어 공사가 치명적인 위험요소임에도 불구

*E-mail: haijoo0114@empal.com

하고 임의 개수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건 중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요 화재사건을 조사하여 그 화재사건 이후 개선되어 온 제도변화를 조사·분석하여 향후의 제도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소방안전교육기관의 인지여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북부의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관계인 및 직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방화관리실태 설문서를 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한다.

2. 다중이용업소 주요 화재 이후 개선 및 변화된 제도

2.1 다중이용업소 주요 화재사건 개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전체 화재발생건수 중 다중이용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한 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대부분 건물의 경우 칸막이벽 등에 의해 작은 공간

으로 세분되어 화재 시 쉽게 착화되고,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며, 실내 장식을 위하여 창문 등 개구부를 막아 무창충화 되어 가지고 있다. 특히 단란주점, 유홍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용객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화재 시 피난활동상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에 익숙한 관계인이나 직원의 적극적인 대피유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²⁾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창천동 락카페 롤링스톤 화재, 인천 인현동 라이브 호프집 화재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청소년 등의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특히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 관계인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교육의 부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2 부산 자이언트노래방 화재 및 서울 진실노래방 화재('95.11~12월) 이후

노래연습장 등 시설점검이 강화·지시되었고, 신규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에는 소방시설 완비증명 첨부제가 시행되었으며, 국무총리실과 관계기관의 합동회의 결과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예방과)가 주관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전국소방인연합회, 소

Table 1.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중 적용대상 및 적용시설

적용대상			
업종별	노래연습장	단란·유홍주점	비디오물 감상실
관련 법령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허가)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록)
적용시설			
피난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도장치 : 유도등, 피난유도선, 유도표지등, 비상조명등 경보장치 : 비상벨, 싸이렌, 비상방송시설 ※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가능하여야 함		
소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도, 통로 등에는 능력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또는 자동화산 소화용구설치 주거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상음향 차단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 자동차단장치는 관리자가 상주·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난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수, 스팀, 온풍 등을 이용한 간접가열방식으로 설치 전기, 가스, 석유 등을 이용한 직접가열방식으로 설치한 경우 바닥 면과 밀착고정하거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은 사용 가능 		
누전차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내장재 불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장내 칸막이, 벽, 천장, 바닥의 내장재 		
비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도, 통로 대피에 장애 없는 구조이며, 적치물 방지 금지 		

방설비기술사회 등의 참석하에 노래방시설기준이 제정되어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책이 시달되었고, 종사자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로 2회 이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중 적용대상 및 적용시설이 다음의 Table 1과 같다.³⁾

Table 2. 우리나라 다중이용업 안전대책제도 변천과정

관련근거	내용	비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91.3.8 제정)	단란주점, 유홍주점(식품위생법)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공중위생법) 비디오물감상실법,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의거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	80~90년대 초반 노래방 등이 전국 에 유행
내무부 예방 13810-125호 (95.12.13)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 첨부제 시행	자이안트·진실 노래방 화재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내무부 고시 제 1996-71호 (96.3.30)]	적용대상 : 노래연습장, 단란·유홍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적용시설 : 피난설비, 소화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난방시설, 누전차단기, 내장재불연화, 비상구 개별법에서 허가·등록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 (96.6.7)	'95. 12. 13부터 시행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제 법적 근거 마련(비디오물 감상실법)	
부시장 방침[본부 예방 13810-1463호 (96.10.15)]	유홍·단란주점, 지하일반음식점 허가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 첨부(지하일반음식점 전대상 추가)	롤링스톤락카페 화재
본부 예방 13810-1685호 (96.11.29)	지하 유홍점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경각심 제고를 위한 불조심 서약서 정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41호 '96.12.20)	유홍주점, 단란주점 및 66㎡ 이상인 지하층의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신청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본부 예방 13810-1820호 (97.1.28)	비상탈출구 세부시설 기준 시달	
소방법령 시설 소방법 제8조의2('97.3.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내지 제4조 의3 ('97.9.27)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 ('97.12.2) 타법령 개정('97.12.2)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법제화 노래연습장에 대한 완비증명제도 최초 법제화 소방시설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으로 용어 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의2 내지 제143조의 4 신설 ('98.5.12)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신설	
행정자치부 예방 13810-242호 (99.11.22)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및 장식물 사용금지 권고 등 강조 지시	히트노래방 화재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개정 (01.3.20)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확대 실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 : 100 m² 이상(지하층 66 m² 이상), 지상1층·피난층 제외 게임제공업 : 최초 법제화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신설 (01.3.2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시행 '02.1.1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 신설 (02.10.16)	신종다중이용업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 대상 추가	시행 '03.1.1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개정 (02.3.30)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신설	시행 '03.1.30

2.3 틀링스톤 타카페 화재('96.9.29) 이후

서울소방본부가 식품점업체소 특별소방대책을 수립하여 점업체소의 화재예방 특별지시를 내렸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66 m² 이상인 지하층의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첨부하고,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정하였다.⁴⁾

2.4 히트노래방 화재('99.10.30)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우레탄폼 등 합성수지의 건축물 내재 및 장식물로 사용이 금지되었고,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이 확대·실시되었다.⁵⁾

2.5 다중이용업 안전대책제도 변천

다중이용업 안전대책제도 변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다중이용업소의 운영 실태조사

3.1 조사방법

서울,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화재안전 의식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 및 직원 등 300명(업주 113명, 직원 187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방식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현황, 화재안전의식, 특히 방화관리체계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와 효과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은 다중이용업소 범위, 국내 방화관리규정 등 조사에 필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고 설문서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3.2 설문조사 주요 결과 분석

다중이용업소 설문서에 대한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는데, 주요 항목에 대한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3.2.1 다중이용업소 안전성 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에 대한 빈도분석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관계인 및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0명(63.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이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설계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명(16%)으로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성 확보

N=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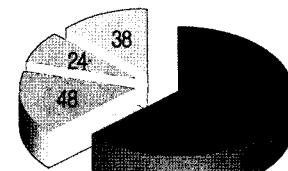


Fig.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사항.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충분한 화재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잘 모르겠다'가 38명(12.7%)이었고,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24명(8.0%)에 불과하였다. 이는 관련법규 및 제도를 실제로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사료된다.

3.2.2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빈도분석은 Fig. 2와 같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96명(85%)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응답 7명(6.2%)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실제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 필요성

N=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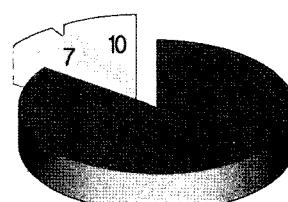


Fig. 2.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 여부(업주만).



Fig. 3. 소방훈련 및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업주를 제외한 직원만).



Fig. 4. 소방안전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는지(업주만).

3.2.3 소방훈련 및 교육 수료여부

소방훈련 및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빈도 분석은 Fig. 3과 같다.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인 업주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68명(36.4%)에 불과하였고, 교육 받은 적 없다는 사람은 119명(63.6%)이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자율방화관리체계 및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2.4 소방안전교육기관의 인지여부

다중이용업소 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빈도분석은 Fig. 4와 같다.

다중이용업소 대표자 등 업주 113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4명(30.1%)에 불과하였고 ‘소방안전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응답이 58명(51.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

교육실시에 따른 발생상황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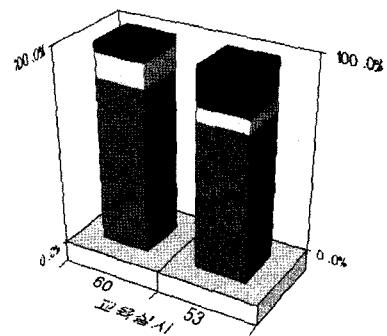


Fig. 5. 교육실시 여부에 따른 발생상황에 대한 응답.

가 도출된 것은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1명(18.6%)이나 되었다.

3.2.5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발생상황

다중이용업소 업주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실시 여부에 따른 발생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Fig. 5와 같다.

소방안전교육실시의 여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업주가 예측하는 화재확산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적 있는 업주 60명 중 53명(88.3%)이 ‘경우에 따라 자신이 있는 장소까지 화재가 확산된다’고 본 반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적 없는 업주 53명 중 42명(79.2%)이 그러하다고 보았다. 또한 ‘잘 모르겠다’고 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실시자의 경우 2명(3.3%)밖에 없었으나, 소방안전교육 미실시자의 경우 8명(15.1%)이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여부에 따라 화재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설문조사 주요 결과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에서 새벽까지 등 불규칙한 업소가 많기 때문에 소방기관 등에 의한 점검 등 방화관리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주, 종업원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대부분이 해당 업소에 근무하거나 그것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상당히 짧은 것으로 조사되어 업주 등 관

계인의 변경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업주나 업태 등의 변경에 따른 실내구조의 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사후관리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업주 또는 직원은 평상시 화재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에 따라 전문안전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 관계인이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시스템만 갖추어진다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역량과 수준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못한 응답자에 비해 화재 등의 비상시 위기대처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업주 등이 교육을 받은 경우 직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이들에 대한 전문안전교육기관에서 자율방화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중이용업소 자체에서의 자율방화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교육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고찰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즉 다중이용업소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건물구조, 입지형태, 사용 및 관리특성, 이용행태 및 이용자 특성 등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나 다중이용업소 관리권원자나 종업원 등 관계인의 노력에 의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다중이용업소에는 비록 화재안전시설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행태가 오히려 화재확산 및 피난장애 요인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화재발생시 소방의 화재진압활동도 어려운 곳에 입지하고 있어 자율방재체제에 기본을 둔 방재안전활동 능력 확보와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 현황 실태조사에서도 주로 수용인원

30-50여명인 규모의 업소로서 비방화관리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나 직원들은 스스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의 대상과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방화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1급·2급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그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의무는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업소는 특히 관리권한이 복잡·미약하고, 관리권한의 잦은 변경,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시스템의 기반이 부족하거나 미약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다중이용업소가 건축물이 1급·2급 대상인 경우는 기본적인 방화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현재의 방화대상의 규정이나 소방안전교육시스템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에 대한 방화관리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며, 대상의 변화가 빈번하고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또한 고tan력이므로 일률적인 제도를 통한 안전장치로 규제하거나 시대변화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자율방화관리를 원칙으로 접근하면서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주요 화재 이후 개선 및 변화된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운영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고찰 등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자 변경 시 허가관청에서 당해 소방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전달 및 정보공유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업소라 하더라도 “관리권원자-방화안전관리, 관계인-방화안전관리업무종사자” 등의 관계설정으로 책임소재와 위임관계에 대한 명확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다중이용업소에 업소방화관리책임자를 명확히 게

시하는 등 방화안전 관계인 선임을 명확히 한다.

2. 다중이용업 대표자 및 관계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LPG차량 운전자의 가스안전교육 등과 같이 영업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다중이용업 영업허가사항에 '소방안전교육이수증'을 첨부토록 규정한다.

3.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실시하여 비방화관리대상인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교육주체를 소방관서가 아닌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소방관서와 전문교육 기관간 교육시스템개발 및 운영을 위한 유기적 연계방안 시스템을 확보한다.

4. 소방검사실명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현재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를 법적 사항으로 한 제도를 정립시켜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를 첨부하고, 구조 또는 실내장식물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신고」,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무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실내장식물

의 불연화 유지관리 확보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사)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한 소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005. 8. 4).
2. 강성동, “다중이용업소 바닥마감재의 연소가스 특성 평가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지, Vol. 16, No. 2, pp.14-15(2002).
3. 내무부 예방 13810-125호(1995. 12. 13).
4. 본부 예방 13810-1463호(1996. 10. 15).
5. 행정자치부 예방 13810-242호(1999. 11. 22).